

I·SEÒUL·U

2019년 조경사업 대상지조사 지침



2018. 6.

푸른도시국
(조경과)

목 차

사업연도: 2019년

1.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2.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3.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4.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및 조성
5. 옥상녹화·텃밭 조성
6.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
7. 에코스쿨 조성
8.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9.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
10.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11. 공개공지 되살리기
12.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3.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4. 가로정원 조성
15.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16. 가로변 녹지량 확충
17. 사계절 꽃길 조성
18.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19.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1

2019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지역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 공동체 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어두운 회색 골목길을 아름다운 녹색 보행길로 개선 및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 마련

■ 추진방향

- 관 주도가 아닌 주민공동체에 의한 스스로 나무심고 가꾸는 정원문화 조성
- 생활 주변 마을 골목길, 자투리 공간 녹화를 통한 시민체감 녹화
- 마을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는 골목길 정비를 한 마을환경 개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제외 기준

● 대상지 선정기준

- 주민 생활 공간 연접, 자투리공간이 곳곳에 있는 골목길 등 사업효과가 크고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가 높은 곳 우선 선정
- 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골목길 또는 통행량이 적은 일방통행 골목길로 식재 기반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시민단체 및 주민이 녹지를 조성하고 가꾸기 용이한 곳
- 공원녹지 소외지역,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가 용이한 곳
- 토지(담장 포함)사용 승낙, 녹화협약서 체결 가능 등 지속적인 조성·관리가 가능한 지역 등

● 대상지 제외 기준

-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 도로 개설 등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 예정인 토지
- 일반개인주택인 경우 재건축, 개보수 예정인 담장 인근 골목
- 상시(종일) 도로 내 주차지역 등

■ 대상지 평가 지침

-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 우선 선정
-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가시적인 효과 등이 높은 지역 우선 선정
- 녹지조성 및 관리가 용이한 곳 우선 선정

■ 자금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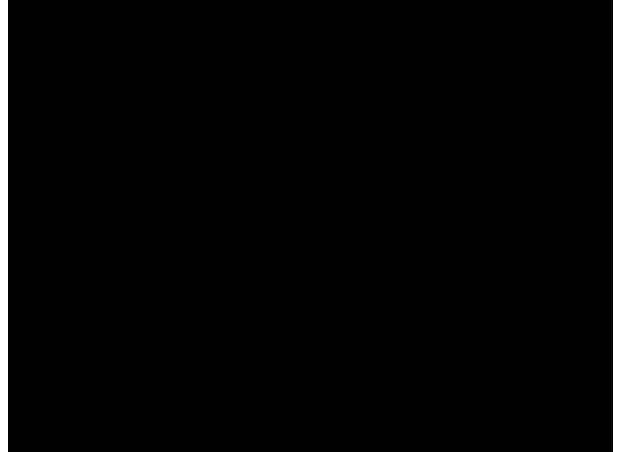
- 2018년 총사업비 : 801,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24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560,000천원
 - 사무관리비 : 1,000천원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단가 : 118,000원/ m^2 이내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82,600원/ m^2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35,400원/ m^2

[사업담당자 : 조경협력팀 주무관 박혜선 (☎2133-2107)]

■ 조성사례 사진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조성전)〉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조성후)〉



〈성동구 용답동 25일대(조성전)〉



〈성동구 용답동 25일대(조성후)〉



〈성북구 북청마을(조성전)〉



〈성북구 북청마을(조성후)〉

2

2019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한 후 열린숲길 조성 및 개방을 통해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지확충,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녹시율 향상, 쾌적한 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담장철거, 열린숲길 조성 및 개방
- 조성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연차별 추진
- 설계·조성·준공 과정에 지역주민 및 시민참여 녹화사업 추진
- 녹지량 확충 및 주민쉼터 제공, 산책로 및 편의시설 설치
- 2단지 이상 공동참여지 우선 선정
- 아파트측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가능 시 우선 추진
- 주택정책과의 '커뮤니티 전문가'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지 전수조사

- 조사대상 : 향후 조성대상지를 일제히 전수 조사
- 조사방법 : 대상지 조사 및 선정, 조성방향, 대상지 평가에 의거 조사
- 조성방법 : 자치구비와 매칭으로 차등보조 추진, 아파트측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가능지 우선추진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
-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 아파트측의 자부담 가능지 우선 선정
 - 2개 단지 이상 공동참여가 가능지 및 녹지조성 면적이 많은 순위에 따라 선정
 - 공원, 녹지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 광폭의 도로 크기에 접한 순위,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 등

■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대상지

- 소요예산은 매칭으로 차등보조하며 시비, 자치구비로 구성됨
 - ※ 구비는 따로붙임의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매칭으로 자체확보
- 2개소 이상 단지의 공동참여가 가능한 아파트 우선 지원
- 입주민들의 2/3 동의 및 5년간 녹화협약 체결 가능여부
- 담장철거, 녹지·휴게공간 조성, 개방가능 여부 등 효과가 큰 아파트
- 담장 개방 후 추가로 타 구조물(담장, 웬스 등)이 설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고, 철거대상지가 도로에 접한 지역을 우선 선정
- 광폭의 도로 크기에 접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책사업(띠녹지 조성 등) 대상지와 접한 아파트단지 우선 선정
- 조성 후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다중의 접근 이용이 용이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 임대아파트나 서민층아파트 단지 등 정책적 수혜가 필요한 지역
- 아파트측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가능시 우선 추진

● 제외지

-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녹화협약 체결의사가 없는 아파트 및 개방의사가 없는 지역
- 소요예산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펀드로 확보하여야 하나 자치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은 제외
- 주민들의 과도한 시설요구 지역
 - ▶ 조경석 쌓기, 벽천 수경시설, 조형물 설치, 간판석 등 과도한 시설요구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등
- 담장 철거후 보안 등을 이유로 다시 투명웬스 등 구조물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 7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이 있는 지역

■ 조성방향

- 입주민(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징구, 녹화협약서 체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이행

- 특히 저층주민(1~3층)의 동의서 반드시 징구 및 의견수렴 철저
- 설계·조성·준공 과정에 지역주민 및 시민참여 적극 추진
- 서울시 지원비 외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지원받아 녹지조성
 - 자치구 주택관련부서의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요청
(근거 :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조경녹화, 담장허물기, 시설물 보수 등)
 - 아파트 주민협회의 자부담이 가능한 곳은 일부 주민부담 ⇒ 시비 우선 지원
-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시행으로 녹지 네트워크 연결 및 녹화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녹지축 연결로 녹지 네트워크화 및 도시녹화사업의 효과 상승
- 담장 철거부분에 녹지, 휴식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준 공개공지 개념도입 및 반드시 개방
- 열린녹지 인접지 중 보도폭이 넓은 곳은 떠녹지 등과 함께 녹지조성
- 기존 녹지훼손 및 아파트내 녹지(담장주변 외의 지역) 정비 지양
- 수목식재 위주의 녹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 최소화
 - 특히 불필요한 성토, 조경석쌓기, 산석붙임, 기존 수목 이식후 재식재, 과도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과도한 조형수목 식재, 고급시설물 설치, 벽천, 수정시설 설치 등은 지양
 -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물 정비는 금지(경비실 정비, 명패석 설치, 자전거 보관대 및 음식물쓰레기장 정비, 조형물, 조명시설 등)
-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안내
 - 지원대상 :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유지, 단지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열린녹지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여 홍보
 - 설치장소 : 도로변 인접지에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
- 아파트 담장 및 펜스·보행자 보호용 펜스·조경보호용 울타리 등의 철거는 반드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주민동의 하에 철거
 - ※ 보안 등을 이유로 철거한 펜스를 재설치(투명 또는 목재펜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부속물을 철거하고자 할 시, 다음사항 검토 후 철거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유사한 절차에 의거 처리
 - ⇒ 시설물 관리부서 및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있는 경찰청, 교육청, 인근 주민들과 협의 및 의견수렴
 - ⇒ 당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안전환경의 변화 등 종합적인 검토
- 방음벽 철거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소음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철거
-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대상지 평가

- 지역여건 수요 검토 및 주변현황 파악
 -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인지 또는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 여부
 - 500m 반경에 공원과 녹지가 없는 지역
 - 주변의 공원과 녹지를 연계하여 조성이 가능한 지역
-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 및 의견 수렴
 -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 조성후 개방하는데 입주민의 의사가 확실한지?
(사업동의 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
 -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 자치구 의견 검토 반영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 관련근거
 - 예산담당관-5036 :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 재조정(시장방침 제271호 / '08. 5.23)
 - 예산담당관-6767 :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 재조정(경경제획실장 / '09. 7.13)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차등지원 비율

기존재정 수요 충족도	50% 미만	50 ~ 70%	70 ~ 100%	100% 이상
해당 자치구	5개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3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개구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시비지원 비율	시비 7 : 구비 3	시비 6 : 구비 4	시비 5 : 구비 5	시비 3 : 구비 7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조 현(☎2133-2120)]

■ 조성사례 사진



노원구 중계동 성원아파트



금천구 독산동 현대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주공9단지아파트



금천구 독산동 주공아파트



노원구 하계동 극동,건영,벽산아파트



아파트 열린녹지 안내판 설치

3

2019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공원녹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 생활주변에 수목식재는 가능하나 평소 이용이 적은 유휴공지를 녹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생활권 가시구역 사유지 우선 녹화
- 불필요한 콘크리트 포장지 녹화 및 벽면, 인공지반 녹화 병행 추진
- 빈터(틈새, 자투리땅) 찾기, 설계·조성·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주민 실질적 참여
- 자투리땅 지속적인 발굴 및 사업대상지 시민공모 병행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사유지만 해당
 - 주택가 주변 또는 보도와 건물 사이 빈터
 - 통행이 적은 넓은 보도변 공터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주변 사각지대 등
 - 제외지 ➡ 구유지는 자치구 사무로 제외
 -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포함된 토지
 - 도로 개설 등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 예정인 토지
 - 기 조성한 녹지를 보완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녹지” 및 “공원” 지역
- ※ 도로변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인 부지는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제출

■ 대상지 평가 지침

- 자투리땅 녹화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역주민(마을공동체 등)의 신청 및 나무심기 관리에 직접 참여

- 녹지의 집단화가 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높은 지역 우선 조성
 - 학교공원화, 떠녹지, 인공구조물 녹화 등과 연계하여 조성 효과가 높은 지역
- 시설녹지, 공원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390백만원(시설비 240, 자치단체자본보조 150)
- 2019년 조정지침 : 총 사업비 200백만원 내외
 - 사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구유지 제외)
 -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주소 및 소유자 확인
 - 포장 등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고 식재 위주로 사업비 반영
 - 도로변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인 부지 제외(‘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제출)

■ 중점추진사항

- 설계·조성(나무심기)·준공 과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적극 참여 추진
 - ※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꽃과 나무(유실수) 중심으로 식재 조성
- 일정 공간에 지역주민이 가꾸는 꽃·텃밭 조성으로 소통·화합과 정서순화

■ 단계별 시민(단체)참여사업 전개

단 계 별	조 치 사 항	기 대 효 과
1단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기본·실시설계시 추진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 시민참여 활성화 ▶ 사전 민원예방
2단계	▶ 공사 추진시 나무심기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참여 추진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및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	▶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원활한 사업 전개
3단계	▶ 녹지관리실명제 운영 ☞ 사후관리에도 주민, 시민단체 등 참여 유도	▶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공사시행 방안 - 시범 추진

- 시민(단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꽃과 나무심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2018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지침
 - 조경분야 : 조경재료의 설계시 할증을 적용기준 및 조경식재품 적용시 시민(단체)가 스스로 참여에 대하여는 인부임 품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 등을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적용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강정호(☎2133-2125)]

■ 참고자료

● 추진사례



광진구 자양동 813-1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전



광진구 자양동 813-1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후



서초구 양재동 78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전



서초구 양재동 78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후



은평구 갈현동 227-26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전



은평구 갈현동 227-26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후

4

2019년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및 조성

도시계획시설(녹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민원해소와 녹지의 체계적인 확충,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상 및 조성 계획을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녹지)은 20년 후 효력이 상실(2020년 6월 30일) 되므로 법정 기한 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녹지
- 완충기능 및 경관향상을 충분히 발휘하는 녹지
- 철도변 인접지역으로 사업효과가 큰 녹지
- 주택가지역 자연재해의 우려지역 및 무단경작지, 야적장 등

■ 대상지 평가 지침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한 사업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1단계 계획이 수립된 녹지

■ 자금 투자계획

- 2019년 조정지침
 - 진행 중인 사업 우선시행 및 사업효과가 큰 대상지

● 사업비 산정방법

- 보상비

- 토 지 : 공시지가 2배 또는 주변 토지보상 실례 기준액
- 건 물 : 주변 보상 실례 기준액

- 녹지 조성비(제경비 포함) : 200,000원/ m^2 내외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 교 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본
- 한국잔디 : 10,000원/ m^2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현호재(☎2133-2118)]

■ 참고자료

● 추진사례



경부제2녹지 원경(동작구 노량진동)



경부제2녹지 근경(동작구 노량진동)

5

옥상녹화 · 텃밭 조성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건물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으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선도하고자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조사·발굴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서울시 옥상녹화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녹지율 확보 및 옥상녹화의 질적 수준 제고
- 옥상정원, 옥상텃밭, 원예치료정원 등 옥상녹화 후 다양한 이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및 공사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시, 구, 국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
 -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65m^2$ 이상인 곳
 - 건물 내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기관의 옥상녹화 조성 의지가 높은 곳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곳
- 제외지
 - 옥상을 이미 녹화하여 신규조성지가 없는 곳(의무조경면적으로 조경시설을 기 설치한 곳 포함)
 -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옥상녹화 후 5년 이상 유지가 어려운 곳
 - 새로운 녹지 조성 가능면적이 $65m^2$ 미만인 곳

■ 대상지 평가 지침

- 예비진단조사표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누수 및 균열, 구조 및 용도변경 사항 등 조사
- 옥상녹화지의 다중이용 가능성 등 조사 결과
 - 옥상녹화 후 개방여부, 이용대상, 이용 예상인원 등 조사

■ 자금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1,900백만원
- 자금투자 배분원칙 : 옥상녹화 희망건물 조사결과 및 파급효과 고려 투자규모 결정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단가 : 350,000원/m² 내외
 -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결과와 건축물 제반여건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 보조사업 지원기준(건축물 소유별)

- 시건물 : 총사업비 전액 지원
- 구건물 : 총사업비의 70% 이하 지원(차등지원 비율)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50% 미만	50 ~ 70%	70 ~ 100%	100% 이상
해당 자치구	5개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3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개구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시비지원 비율	시비 7 : 구비 3	시비 6 : 구비 4	시비 5 : 구비 5	시비 3 : 구비 7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건물 : 총사업비의 50% 지원
- ※ 총사업비 = 구조안전진단비 + 설계비 + 공사비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김현이(☎2133-2121)]

■ 참고자료

●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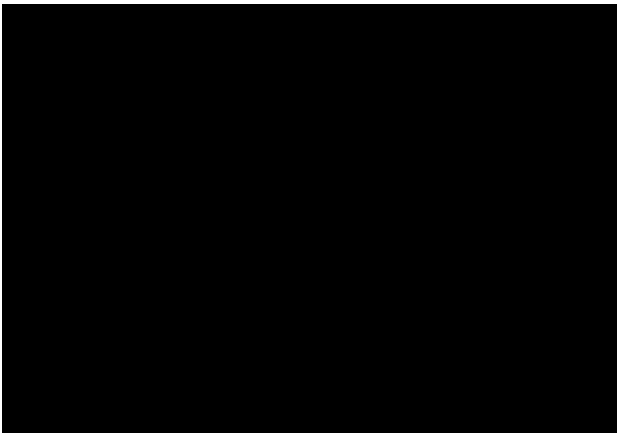


서부지방법원 조성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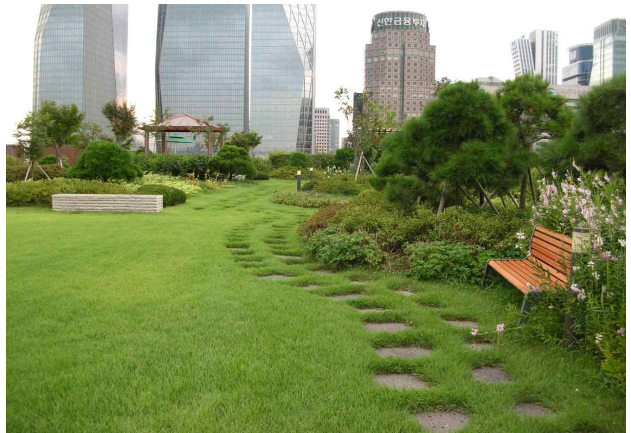


서부지방법원 조성 후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성 전

⇒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성 후



꿈나무 종합타운 조성 전

⇒



꿈나무 종합타운 조성 후

6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

건물 옥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옥상녹화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도시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로 新기후체제에 대응하는 등 우리시의 에너지 정책 확대·보급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방향

- 서울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설계 및 시공과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
- 건물 옥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 일부는 옥상정원, 옥상텃밭, 원예 치료정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시, 구, 국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
 - 옥상녹화가 완료된 건물로 기존 녹지공간 훼손 없이 휴게시설, 실외기, 냉각탑 상부, 옥탑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곳
 - 주변 건물 등 환경조건에 따른 일조시간이 3.2시간 이상인 건물
(“서울시 햇빛지도”에서 제공하는 연간 일사량 등급 참조)
 - 녹화가능 최소면적($65m^2$) 이상의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며 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지가 높은 곳
 - 옥상녹화·태양광 연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곳
- 제외지
 - “서울시 햇빛지도”의 연간 일사량 등급과 태양광 발전 전문가의 현장 평가 등 종합평가 5등급 미만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양
 -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 후 5년 이상 유지가 어려운 곳

■ 대상지 평가 지침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 건물 등 환경조건에 따른 일조 시간이 긴 건물 우선 선정
-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가 가능하며 사업취지에 맞는 가시적인 효과가 높은 건물 우선 조성
- 조성 및 관리가 용이한 건물

■ 자금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250백만원
 - ※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여부 검토 중
- 자금투자 배분원칙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희망건물 조사결과 및 파급 효과 고려 투자규모 결정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단가 : 3,000천원/kW(최대 50백만원/개소 지원 가능)

■ 보조사업 지원기준(건축물 소유별)

- 시건물 : 총사업비 전액 지원
- 구건물 : 총사업비의 70% 이하 지원(차등지원 비율)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건물 : 총사업비의 50% 지원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김현이(☎2133-2121)]

■ 참고자료

● 조성 사례



개포혁신 디지털파크



난곡119 안전센터



신림119 안전센터



마포소방서



시흥1동 어린이집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7

2019년 에코스쿨 조성

도심 생활권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학교의 유휴공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친자연적으로 안전·쾌적하게 집중 녹화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거점 공원으로 제공

■ 추진방향

- 학교내 유휴공지 특히 나대지화 된 공간을 대상으로 녹지 확충
- 에코스쿨 사업은 옥상녹화, 자연학습장, 학교숲, 벽면녹화, 천연잔디밭 등의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동일 학교에서 2개 부분에 동시 참여 가능)
- 학교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적극 참여 유도 및 공동유지관리 체계 확립
- 서울시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제고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지금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 우선선정
 - 학교내 유휴공지(나대지 등)에 다양한 녹화패턴을 적용하여 녹지로 조성하는 학교 우선선정
 - 주변에 공원녹지시설이 부족하여 생활권 공원(녹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 학교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의지가 크고 적극적이며 조성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학교
 -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및 자치구별 배분으로 수혜 균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천연잔디밭 일부 조성이 가능한 학교

● 제외지

- 학교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거나 공사중인 학교
- 단순히 학교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원하는 학교
(사례: 교문 및 담장 교체, 스탠드 보수, 학교내 보행로 및 차도 보수 등)
- 조성면적이 협소하고 지역주민 이용이 어려워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학교

■ 대상지 평가 지침

● 지역여건과 수요 검토

- 인구수(수혜범위)에 비례한 우선순위가 높은 곳인가?
- 지역의 공원녹지 등에 대한 수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 학교장의 에코스쿨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 학교장의 에코스쿨 조성 의지는 어떠한가?
- 사업완료 후 녹지공간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활동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참여의지가 강한가?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9,22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2019년 조정지침

- 학교내 대상지의 규모 및 녹화패턴에 따라 지원
※ 투자자금의 상한선 : 5억원 범위 내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 단가
· 옥상녹화 조성 : 350,000원/ m^2

- 벽면녹화 조성
 - ▶ 등반보조재가 없는 경우 : 200,000원/ m^2
 - ▶ 등반보조재가 있는 경우 : 350,000원/ m^2
 - ▶ 벽화수 및 스크린 공법 등 특수공법 : 400,000원~600,000원/ m^2
- 자연학습장 조성 : 250,000원/ m^2
- 학교숲 조성 : 250,000원/ m^2
- 천연잔디밭 조성 : 150,000원/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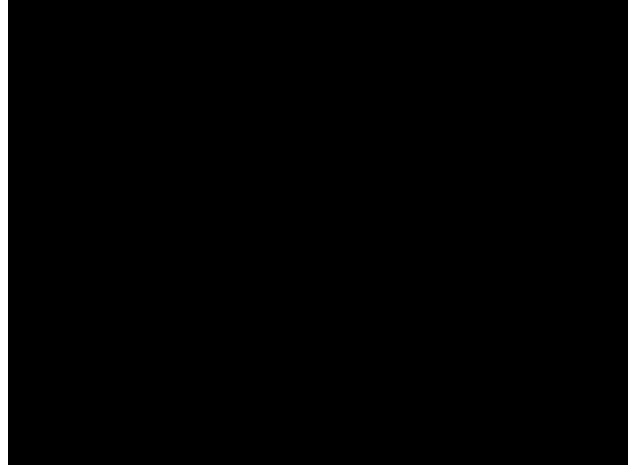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조 현(☎2133-2120)]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중구 광희초



마포구 성원초



동대문구 동담초



서초구 반포초



송파구 삼전초



강동구 둔촌고

도심지 시민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에 지하철 용출수 등을 이용하여 분수·벽천·실개울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량한 가로경관 조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추진방향

- 시민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가로변의 유희공간 내 설치
- 조형물 및 조명을 이용하여 사계절 볼거리가 다양하고,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수경시설 도입
- 에너지 과다 소모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대형 수경시설 지양
- 유지관리를 고려한 수경시설을 확충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곳부터 우선 추진

■ 대상지 및 제외지

● 대상지(시유지)

- 한전, 지하철 등 발생용수의 활용이 가능한 곳
 - 시민과 차량 이동이 많은 가로변의 소광장·녹지·광폭의 보도·절개지 및 유희공지로서 시민들에게 활력 제공과 경관향상 효과가 높은 곳
 - 주위가 개방되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녹화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으로 제공 가능한 곳
- ※ 대상지 선정 시 사전 확인사항 : 도로관리부서 및 재산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여부

● 제외지

- 수경시설 설치 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
- 도로변 확충 등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곳
- 녹지대 등 수목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곳

※ 구도로, 구유지는 자치구사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개정)

● 재정비 대상지(시유지)

-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
-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동을 중지한 시설
- 리모델링 시 조형물 및 조명을 이용하여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재조성의 효과가 있는 곳

■ 대상지 평가 지침

- 시민 및 차량 통행이 많은 가로변 또는 교통 요충지·상가·유통상가의 밀집지역으로 투자 효과가 높은 장소인가?
 - 시민 수혜범위를 고려 ⇨ 대상지의 우선순위 평가
- 수경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고 시민 및 차량 통행에 지장 요소는 없는가?
- 부지의 형상과 주위 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수경시설인가?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1,960백만원(시설비)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 단가
 - 바닥분수 설치 : 400천원/ m^2 내외
 - 실개천 조성 : 300천원/ m^2 내외
 - 벽천분수 설치 : 500천원/ m^2 내외
 - ※ 현장여건 및 설계결과에 따라 사업비 단가 조정 예정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현호재(☎2133-2118)]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지하수 용출수를 이용한 보도변 실개울)



(차도 교통섬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바닥분수)



(넓은 보도의 한편을 이용하여 실개울 조성)



(중앙분리대의 조형물과 함께 설치한)
실개울과 분수



(보도변의 기존 녹지를 이용한 벽천과 분수)



(지하철역 소광장을 이용한 분수)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열린 행정 이미지 강화로 기관에 대한 친밀감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공기관 담장을 개방·녹화하여 기관의 이미지 개선 및 열린 행정, 열린 사회 여건 조성
-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 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주민의 만족도 향상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공공기관 담장을 개방·녹화하여 녹지확충 및 경관개선 효과가 큰 곳
 - 시·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대상지
 - 관련기관과 토지이용관계에 대한 협의 및 동의를 득한 대상지
- 제외지
 - 사업시행 시 녹지량 확충 및 경관개선 효과가 미비한 대상지
 - 주민 이용도가 낮아 사업의 효과가 적은 대상지

■ 대상지 평가 지침

-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적합성 판단
- 인구수에 비례한 시민 수혜범위를 고려 ⇨ 대상지의 우선순위 평가
- 지역주민 만족도 선호도 평가(휴식공간 제공, 기관 친밀감 향상)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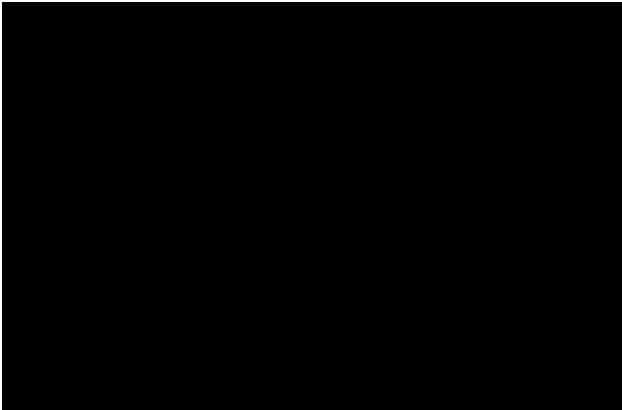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설비)
 - 시 건물 : 총사업비 전액 지원
 - 구 건물, 기타 건물 : 총사업비의 70% 지원
 -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인구, 예비적 주민의견 수렴 · 최근동향 반영 투자규모 결정
 - 공공기관 여건, 녹화가능면적, 적용가능한 녹화공종 고려 규모 결정
- 사업비 산정방법
 - 녹지 조성 단가 : 250,000원/ m^2 내외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교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본
 - 한국잔디 : 10,000원/ m^2
 - 경계석설치 : 120,000원/m
 - 식재기반조성 : 30,000원/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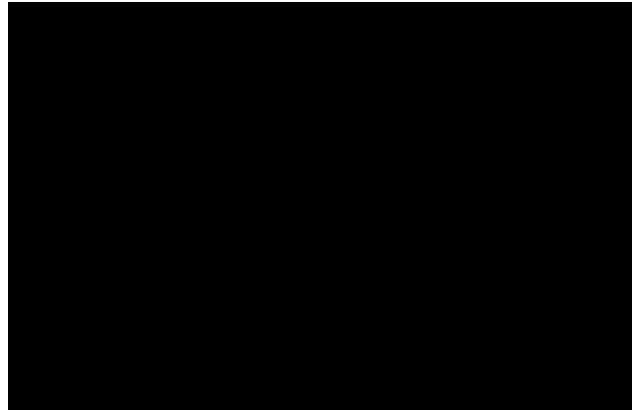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강정호(☎2133-2125)]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영등포소방서 담장개방 및 녹화전



영등포소방서 담장개방 및 녹화후



대한적십자사(양천지사) 담장개방 및 녹화후



신나는 어린이집(양천구) 담장개방 및 녹화후



동부교육청 담장개방 및 녹화후



강서경찰서 담장개방 및 녹화후

도심지내 수목이 임상이 양호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보상 없이 도시녹화(공원) 조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 추진방향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수목이 울창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녹화(공원) 조성
- 공원소외지역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지역 대상지 우선 선정
- 녹지활용 계약은 5년 이상 체결하고 도시녹화(공원) 조성하여 개방조치
-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임상이 양호한 토지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감안하여 최소 300 m^2 이상의 단일 토지
 - 국가 또는 개인·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소유한 토지
 - 토지 최소면적이 300 m^2 미만이라도 지역 여건상 필요시 가능
- 제외지
 -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포함된 토지
 - 도로 개설 등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 예정인 토지

■ 대상지 평가 지침

-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녹지활용 계약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

-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공원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 지목이 임야 잡종지인 토지로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 자금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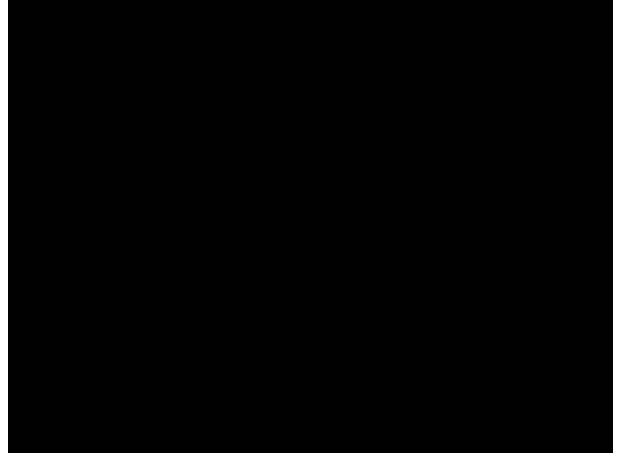
- 2018년 총사업비 : 212백만원
- 2019년 조정지침
 - 녹지활용계약 체결(토지사용 승낙) 토지 우선 선정
 -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권리설정 및 관리에 관한사항 등 사전협의
 - 산책로 등 녹지를 이용하는 편의시설물 설치 및 식생복원
- 사업비 산정방법
 - 컴퓨터조성 단가 : 250,000원/ m^2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 식재공사 ----- 100,000원/ m^2
 - 키큰나무 : 400천원/주 \times 0.05주/ m^2 = 20천원
 - 아교목 : 250천원/주 \times 0.1주/ m^2 = 25천원
 - 키작은나무 : 7천원/주 \times (16주/ m^2 \times 20%) = 22천원
 - 지피식물 : 3천원/본 \times (40본/ m^2 \times 15%) = 18천원
 - 식재기반조성 : 30천원/ m^2 \times 50% = 15천원
 - ▶ 시설공사 ----- 150,000원/ m^2
 - 기반시설 정비 : 50,000원/ m^2
 - 편의시설 설치 : 50,000원/ m^2
 - 산책로 정비 등 : 50,000원/ m^2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천호동 동산(강동구 천호동 397-413) 조성전



천호동 동산(강동구 천호동 397-413) 조성후



동국대(중구 장충동2가 산14-3) 조성전



동국대(중구 중구 장충동2가 산14-3) 조성후



삼육대(노원구 공릉동 산223-1) 조성전



삼육대(노원구 공릉동 산223-1) 조성후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조 현 (☎2133-2120)]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민간소유의 공개공지 조성지에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보강설치하여 공개공지를 기능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로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기존시설 정비가 아닌 편의시설 보강설치로 공개공지 기능 회복
- 공개공지 안내 체계개선을 통한 열린공간 인지성 향상
- 추가적인 수목식재가 가능한 공개공지 발굴·녹화
- 주변 인공구조물을 녹화하여 시민체감 녹시율 증대
- “가로는 정원이다” 와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규모가 200m²이상으로 추가적인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
 - 도심지 주변 가로변의 보도와 연결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
 - 건물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매칭 추진이 가능한 곳 우선 선정
 - 가로정원 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곳 우선 선정
- 제외지
 - 사업규모가 협소한 200m²이하의 공개공지
 - 인접 보도와 연계성 결여, 이용성 및 접근성이 등이 떨어지는 곳
 - 최근 5년 이내 조성 완료되어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개공지

■ 대상지 평가 지침

- 도심지 주변의 대로변과 연계되고 사업효과가 있는지 여부
 - 시민 수혜범위를 고려 ⇒ 대상지의 우선순위 평가
- 비교적 넓은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확충 가능 여부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 공개공지 건축주의 사업 동의 및 매칭사업 추진 가능지 우선 선정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280백만원(시설비) ※ 건물주 자부담 별도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단가 : 120,000원/ m^2 내외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교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본
 - 한국잔디 : 10,000원/ m^2
 - 경계석설치 : 120,000원/m
 - 평의자설치 : 500,000원/개소
 - 식재기반조성 : 30,000원/ m^2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강정호(☎2133-2125)]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종로구 시네코아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전



종로구 시네코아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후



동대문구 메트로팰리스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전



동대문구 메트로팰리스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후



강동구 상떼빌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전



강동구 상떼빌 공개공지 되살리기 조성후

● 추진사례(‘가로는 정원이다’사업 연계추진-지하철출입구 녹화, 의자설치 등)



동대문구 메트로폴리스 앞 보도 조성전



동대문구 메트로폴리스 앞 보도 조성후



동대문구 랜드마크타워 앞 보도 조성전



동대문구 랜드마크타워 앞 보도 조성후



종로구 시네코아 공개공지 앞 보도



종로구 시네코아 공개공지 앞 보도(가로정원)

시민 생활권에 위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장소인 마을마당이 조성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한 상태인 곳을 수목보식 및 편의시설 교체 등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

■ 추진방향

- 노후도가 심한 마을마당을 대상으로 수목보식 및 노후 시설물 정비
- 노후 시설물 정비와 관련 없는 추가 시설물 설치는 지양
- 수목보식 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유실수 및 화목류 등 선호수종 식재
-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정비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제외 기준

- 대상지 선정기준(시유지)
 - 기 조성된 마을마당 중 시민 이용 불편이 크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노후된 마을마당
 - 목과 시설물 보완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대상지
- 대상지 제외 기준
 - 시민 이용 불편이 없거나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마을마당
 -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 단순히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대상지
 -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포함된 마을마당

■ 대상지 평가 지침

- 마을마당의 노후도 및 시민 불편사항, 미관·안전 저해 요소 등이 많은 대상지
 - 녹지 공간에 수목이 부족하여 미관 개선을 위한 수목보식이 필요한 상태
 - 정자, 파고라 등 휴게시설의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정도
 - 기타 노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
- 인구수에 비례한 시민 수혜범위를 고려 ⇨ 대상지의 우선순위 평가

■ 사업비 산출 및 조성단가

- 2018년 총사업비 : 1,110백만원 (시설비)
- 사업비 산정방법
 - 노후 마을마당 정비 단가 : 120,000원/ m^2 내외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교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본
 - 한국잔디 : 10,000원/ m^2
 - 경계석설치 : 120,000원/m
 - 평의자설치 : 500,000원/개소
 - 식재기반조성 : 30,000원/ m^2
 - 기반시설 정비 : 50,000원/ m^2
 - 편의시설 설치 : 50,000원/ m^2
 - 산책로 정비 등 : 50,000원/ m^2

[사업담당자 : 조경시설팀 주무관 현호재 (☎2133-2118)]

도시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방음벽·절개지·담장 등 구조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피복·녹화함으로써 가로변 녹시율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다양한 덩굴식물 식재로 시각적 변화감과 겨울철 녹색의 잎과 여러 덩굴 식물의 특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광폭의 보도는 보행유지 폭을 제외한 면적을 녹지공간화하여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식재지 폭이 좁고 양분 공급원이 없으므로 조성시 우량한 토양과 유기질 공급으로 생육환경을 확보
- 서울시 전역 가로변에 대한 미관저해 구조물을 전면녹화 시행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시도로에 한함)
 - 주요 가로변의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담장 등 미관저해 시설물을 녹화하여 경관향상과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곳
 - 한 개 노선씩 집중녹화로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곳
 - 다른 조정시설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곳
 - 광폭의 보도(건축선 후퇴)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와 함께 차도변 쪽은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 실시가 가능하여 조성시 쾌적한 그린웨이 형태로 사업효과 상승이 기대되는 곳은 병행 추진
 - 인근 토목구조물 등과 벽면녹화를 병행 실시하여 입체적으로 녹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물은 포함하여 실시

※ 대상지 선정시 사전 확인사항 : 도로관리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 제외지

- 도로 개선 사업 또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 곳
- 낡은 수직구조물을 헐고 신규 구조물로 변경을 원하는 시설지
-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상시 육안 관찰이 필요한 구조물

■ 대상지 평가 지침

- 주요 도로변이나 중점노선으로 조정시설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
- 통행 시민 및 차량의 가시권 범위의 구조물로서 가로변 녹시율 증대와 가로 경관향상의 효과가 있는 구조물인가?
- 벽면구조물의 높이, 길이가 덩굴식물식재로서 녹화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며 시설물의 용도상 벽면녹화에 합당한가?
- 인근 공원·녹지 시설과의 연결성을 갖고 선형의 녹지로 연장하여 기존시설의 가치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 보도넓이에 따른 적합한 화단폭을 갖고 있는가 또는 특수공법 적용시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1,732백만원
 - 시설비 : 1,729백만원
 - 시설부대비 : 3백만원
- 2019년 조정지침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시설 규모 및 조성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각 구별 적정 사업대상지 연장 및 조성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화단 폭에 따른 면적, 식재종류 및 녹화방법 등에 따라 소요 금액 결정

● 사업비 산정방법

- 조성 단가

- 등반보조재가 없는 경우 : 200,000원/ m^2
- 등반보조재가 있는 경우 : 350,000원/ m^2
- 벽화수 및 스크린 공법 등 특수공법 : 400,000원~600,000원/ m^2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식재공사 ----- 120천원
 - 아교목 : 250천원/주×1주×5% = 12천원
 - 키작은나무 : 7천원/주×(13주/ m^2 ×70%) = 63천원
 - 덩굴성 및 지피식물 : 3천원/주×(20주/ m^2 ×25%) = 15천원
 - 식재기반조성 : 30천원/ m^2 = 30천원
- 시설공사 -- ----- 230천원
 - 녹지경계석 : 80천원/m = 80천원
 - 등반보조재 : 150천원/m = 150천원

[사업담당자 : 조경관리팀 주무관 함희진(☎2133-2127)]

■ 참고자료

● 추진사례



도봉구 누원초교 석축



덩굴식물과 함께 야생화 식재로 보행환경 개선



노원구 공릉3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방음벽



상록성 식물 도입으로 사계절 차폐



용산구 이태원로 한남초등학교 방음벽



소폭의 화단 조성후 토양개량제 투입으로 양호한 성장을 보임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

■ 추진방향

- 쾌적하고 걷고싶은 가로 보행환경 조성
- 심적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가로 조성
-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 설계, 시공, 사후관리 과정에 인접 건물주 가로정원 입양 추진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조사방법 : 서울시로부터 위임관리받은 시도도로에 한하여 전수조사
- 대상지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가로수와 가로수, 지하철 출입구 등 유희공간에 정원식으로 휴식공간을 조성 가능한 곳
 - 가로변에 보행자가 쉴 수 있고, 약속과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
 - 지하철 출입구, 한전 분전함, 건물벽면 녹화의 효과가 높은 곳
 - 건물의 공개공지나 건축물 후퇴선 전면 공간과 연계하여 보도에 휴식공간을 조성가능한 곳
- 제외지
 - 도로 개선 사업 또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 곳
 - 가로정원을 조성할 경우 유효보도폭이 2m 미만이 되는 노선
 - 보도포장을 최근 5년 이내 한 곳

■ 대상지 평가 지침

● 평가 조사표 작성시 고려사항

- 도로관리부서의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도로 여부와 도로규모와 보도폭 등을 작성
- 도시계획과 주변상황은 도시계획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도로 경계선, 공개공지, 건축물 후퇴선 등을 확인
- 도로유형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 또는 “2014년 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용보고서” 도로유형 구분 참조
- 서울시 지능형 도시정보시스템(<http://stat.seoul.go.kr>) 유동인구 보고서 지점정보 추출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여 표기
- 사업효과 선형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

● 사업대상지 조사표(첨부 양식 참조)

- 대상지 현황, 도시계획사항, 도로유형, 주변상황, 통행인구, 시설현황, 사업효과, 사업비 산정(공종별 규격, 단가, 금액) 자치구 의견, 위치도, 사진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1,718백만원(시설비 1,716, 시설부대비 2)

● 2019년 조정지침(안)

- 대상지의 가로유형별 사업내용 및 사업량, 예상 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가로정원 규모 및 도입시설, 식재 수종에 따라 조정

● 사업비 산정방법

- 가로정원 조성 단가 : 350,000원/ m^2 내외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 교 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주
- 걸이화분 : 250,000원/등주
- 벽면녹화 : 200,000원/m
- 휴게시설(등의자) : 450,000원/개소

[사업담당자 : 조경관리팀 주무관 함희진(☎2133-2127)]

■ 참고자료

●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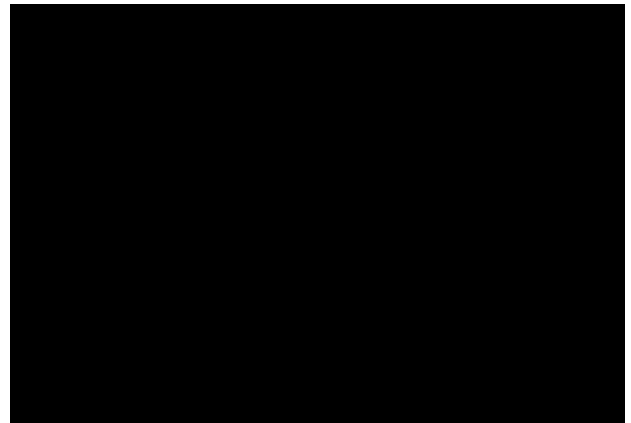
가로정원 사례



가로정원 사례



가로정원 사례



가로정원 사례

가로수 주변 토양 개량과 영양 공급 등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띠녹지 조성, 메워심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가로수를 통한 선형녹지 형성으로 도시녹지축을 연결
- 넓은 폭의 보도에 가로수 2열 식재 추진
- 빗물유입이 가능한 다층구조의 띠녹지 조성 추진
- 조성된 띠녹지의 녹지경계석이 높아 빗물유입이 어려운 곳, 수목 생육 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곳 정비 추진
- 가로수 공분에 대한 메워심기 적극 추진
- 가로수 보호판이 파손되거나 미설치된 곳에 대한 정비 추진
- 가로수 뿌리용기로 보도 요철이 심한 곳에 대한 정비 추진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띠녹지 여유공간에 등 의자 설치 추진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조사방법
 - 2017년 가로수 조성 현황, 띠녹지 현황 통계자료(가능지역) 참고
- 대상지 선정 기준
 - 가로수 2열 식재는 보도폭이 넓어 터널형태로 조성이 가능한 곳에 추진하되 다층구조의 띠녹지와 병행 추진 가능한 곳 우선 실시
 - 다층구조의 띠녹지는 보도폭이 넓고 통행이 빈번하여 보행환경 개선으로

가로수 기능 증진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곳

- 토양개량 및 영양공급은 수세가 전반적으로 약한 노선
- 보호판 파손이 심한 곳과 미설치된 곳

※ 대상지 선정시 유의할 사항

- ① 다층구조의 띠녹지 대상지는 보도폭과 통행량을 조사하여 통행 폭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띠녹지 가능 위치 및 띠녹지 폭원 결정
- ② 차도 반대편 벽면 형태를 조사하여 띠녹지와 벽면녹화, 병열식재가 병행 될 수 있는지 확인
- ③ 보호판은 미설치 되었거나 크기가 작고 파손이 심한 노선으로 선정하되 향후 띠녹지 조성이 가능한 곳은 보호판 교체 및 설치대상에서 제외
- ④ 토양개량은 토양조사결과, 답압상태 등을 파악하고, 영양상태를 면밀히 살펴 수세가 약한 노선부터 대상으로 선정
- ⑤ 가로수 새로심기와 바꿔심기는 가로수심의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곳에 한하여 추진
- ⑥ 띠녹지의 경우 키작은 나무, 초화류가 병행 식재되므로 관리를 고려하여 관수시설 도입

● 제외지

- 도로 개선 사업 또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 곳
- 띠녹지를 조성할 경우 유효보도폭이 2m 미만이 되는 노선
- 보도포장을 최근 5년 이내 한 곳
- 직영으로 키작은 나무와 지피류의 식재가 가능한 곳(재료비로 구매 식재)

■ 대상지 평가 지침

- 가로수 2열 심기 및 새로(메워)심기, 띠녹지 조성 가능한 곳 우선 선정
- 빗물유입 화단으로 정비 가능한 곳
- 가로수 뿌리용기 정비 및 황화현상 치료

■ 자금 투자계획

● 2019년 총사업비 : 6,691백만원(시설비 6,667, 시설부대비 24)

● 사업비 산정방법

- 가로수 새로(메워)심기 단가 : 1,000,000원/주 내외(보호판 포함)
-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설치 단가 : 500,000원/조 내외
- 가로수 뿌리응기 정비단가
 - 보호판 교체가 필요한 곳 : 800,000원/주 내외
 - 보호판 교체가 불필요한 곳 : 300,000원/주 내외
- 황화현상 가로수 치료 단가 : 300,000원/주 내외
- 떠녹지 조성 단가 : 250,000원/ m^2 내외
 - 보도내 녹지 조성(가로수 사이 떠녹지 조성 등) : 250천원/ m^2
- 떠녹지 정비(턱낮춤) 단가 : 200천원/ m^2 (단순 메워심기 100천원)
 - 단순 메워심기 : 100천원/ m^2

[사업담당자 : 조경관리팀 주무관 변동풍(☎2133-2124)]

참고자료

추진사례



북한산길(조성전)



북한실길(조성후)



위례성길(조성전)



위례성길(조성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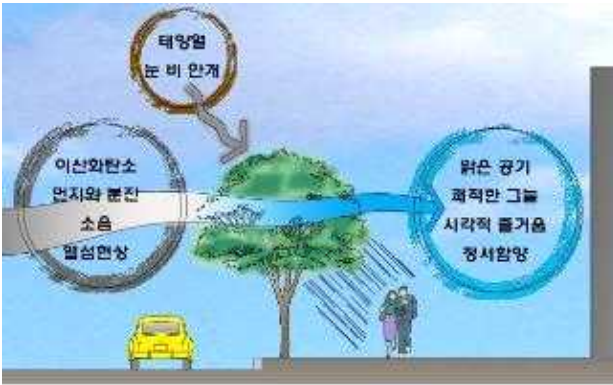
한남로(조성전)



한남로(조성후)

● 조성이미지

-가로수 기능 및 다층식재 이미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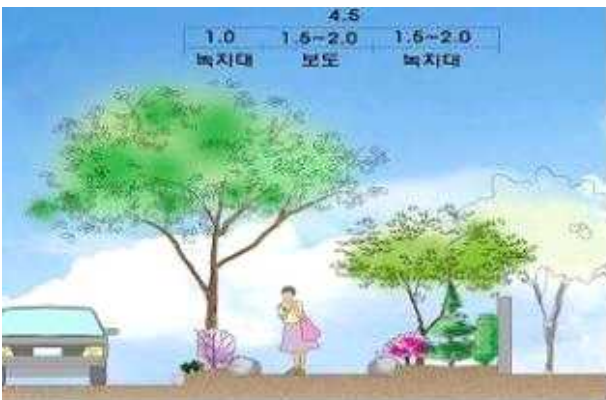


가로수 기능 이미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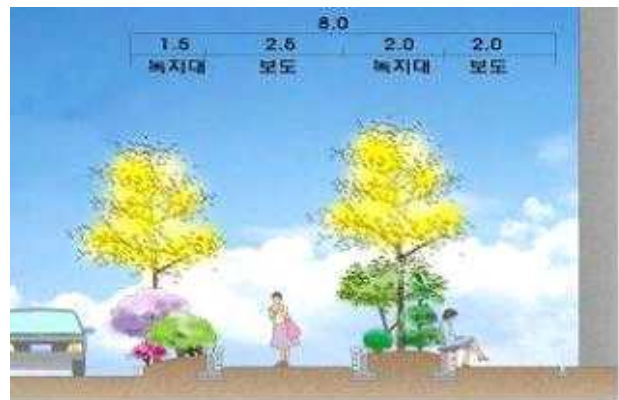


다층식재 이미지 그림

-가로수 다층식재 띠녹지 이미지 그림



4.5m 보도 띠녹지 이미지 그림



8.0m 보도 띠녹지 이미지 그림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소음과 대기오염 저감 및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

■ 추진방향

- 시도로 주변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 가로변 유휴공지(중앙분리대, 교통섬, 안전지대 등)를 적극 활용 녹지 조성
- 시설물 설치 보다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위주로 녹지 조성
- 단풍, 열매, 꽃 등이 아름다운 수종과 키큰나무 그늘목 적극 도입
-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식장소로 제공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조사방법
 - 서울시로부터 위임관리받은 시도로에 한하여 전수 조사
- 대상지 선정 기준
 - 중앙분리대, 교통섬, 안전지대 등 유휴지에 녹지 조성이 가능한 곳
 -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곳
 - 보행(통행)량이 많고 가로경관 향상 및 녹지 조성 효과가 높은 곳
 - 동일 노선에 아래와 같은 사업 시행이 동시에 가능한 곳
 - 벽면녹화, 자투리땅 녹화, 가로수 병렬 식재 등
- 제외지
 - 자치구 관리도로
 - 기존 수목 제거 등으로 사업 후 가로변 녹지량이 축소되는 곳
 -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
 - 도로개설 잔여지 : 도로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여 시행토록 사전 협의
 - 도로확충 등 개발 계획 예정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

■ 대상지 평가지침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제외대상에 해당 여부
- 자치구별 연차별 사업 제출 건수 및 우선 순위 등 고려
- 조성 및 관리가 용이한 곳

■ 자금투자계획

- 2018년 총 사업비 : 7,184백만원(시설비 7,184)
- 사업비 산정방법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식재사업 위주로 사업비 산정
 - 자연석쌓기, 웬스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친환경 재료 활용
 -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의자 등 휴식장소 설치 가능
 - 조성비 : 250,000원/ m^2 내외
 - 정비비 : 200,000원/ m^2 내외
 - 단순 메워심기 : 100천원/ m^2 내외
 - 주요공종 산출(제경비 포함)
 - 키큰나무 : 400,000원/주
 - 아교목 : 250,000원/주
 - 키작은나무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본
 - 한국잔디 : 10,000원/ m^2
 - 지장물 철거 등: 표준품셈 적용

[사업담당자 : 조경관리팀 주무관 변동풍 (☎2133-2124)]

주요 도로변 및 미관이 불량한 곳에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꽃으로 가득한 서울 연출을 위한 대대적인 꽃길, 화단 등 조성
- 꽃씨 파종 등을 통한 대면적 화단 조성으로 예산 절감
- 신품종 원예종을 통한 다양한 조성으로 가로 꽃식재 수준 향상 도모
- 시민들의 자발적인 꽃심기 참여 문화 조성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
 -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시 도로)
 - 교통요충지·상가·유통시설 밀집지역으로 투자 효과가 높은 도로
 - 관광객 입·출국 노선 및 주요 숙소 이동 노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지하철 출입구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도로
 - 녹지공간이 부족한 노선
- 제외지
 -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 사업효과가 미미한 노선
 - 주택가 이면도로, 그들이 많이 지는 노선(예시: 가로수 아래) 등

■ 대상지 평가 지침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제외대상에 해당 여부
-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민 수혜범위, 사업효과, 예산형편 등 고려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 사업비: 1,551백만원(재료비 50, 시설비 1,496, 시설부대비 5)
- 사업비 산정방법
 - 결이화분 설치 단가 : 140,000원/개당 (1년 2회)
 - 화단 조성 단가 : 240,000원/m²당 (1년 3회)
 - 화분 꽃묘 교체 단가: 70,000원/개당 (1년 4회)

[사업담당자: 조경관리팀 주무관 함희진(☎2133-2127)]

■ 참고자료

● 추진사례



종로구 청와대로



송파구 구청사



양천구 목동동로



서초구 양재대로



서대문구 독립문역 앞



영등포 신길지하차도



강남구 학동로



광진구 중랑천 둔치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생장을 도모하고, 보호수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제공

■ 추진방향

- 생육환경이 불량한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등 지속적인 보호수 유지관리
- 보호수 주변 휴게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 제공 및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부여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제외 기준

● 대상지 선정기준

-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생육환경개선) 대상지
 - 지정보호수 생육상태 약화로 외과수술, 토양개량, 뿌리수술, 영양공급, 병해충 방제작업, 고사지 정비 등
 - 안내판 설치, 보호수 웅스 정비, 보호대 정비 등 보호수 시설정비
- 지정보호수 주변 휴게공간 조성 대상지
 - 보호수 주변 주택 및 시설물 등과 접하여 보호수 생육에 큰 지장이 있으며, 벽체 균열 등 인접 건물에도 피해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곳
 - 주민 이용도가 높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공원소외지역)

● 대상지 제외 기준

-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이 계획된 토지
- 도로 개설 등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 예정인 토지

■ 대상지 평가 지침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부합 정도, 제외대상에 해당 여부
-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민 수혜범위, 사업효과, 예산형편 등 고려

■ 사업비 산정 및 유의사항

- 2018년 총 사업비 : 1,100백만원
- 유지관리 사업비 산정방법
 - 보호수 위치별, 공종별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
-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 산정방법
 - 보상비
 - 토지 : 공시지가 2.5배 또는 주변 토지보상 실례 기준액
 - 건물 : 주변 보상 실례 기준액
 - 휴게공간 조성비(제경비 포함): 200,000/ m^2
 - 교 목 : 400,000원/주
 - 아 교 목 : 250,000원/주
 - 관 목 : 7,000원/주
 - 지피식물 : 3,000원/주
 - 한국잔디 : 10,000원/ m^2
 - 지장물 철거 등 : 표준품셈 적용 등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으로 필수시설만 설치하고, 보호수 생육을 위한 예산 산정
 - 지정보호수 외곽 울타리 및 안내판 등은 천연재료인 목재 위주로 계획

[사업담당자: 조경관리팀 주무관 백종주 (☎2133-2123)]

시도로 가로수와 한전으로부터 자치구로 위탁된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도로의 중요한 경관요소인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함

■ 추진방향

- 약한 가지치기와 수형 조절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 억제
- 잔가지 존치로 가지치기 후에도 풍부한 녹음 형성
- 노선별로 수관의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도록 통일성 확보
- 배전선로가 있는 노선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형 관리
- 가로수 가지치기 우수모델 도입
- 가로수 가지치기 사전 교육 실시

■ 대상지 및 제외지 기준

- 대상지(시도로에 한함)
 - 양버즘나무 노선 중 겨울철 가지치기가 필요한 노선
 - 은행나무 등 타 수종은 원칙적으로 가지치기 제외나,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 저축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 시행
 -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은 2017년 사업대상노선 참고하여 작성

※ 대상지 선정시 유의할 사항

- 사각전지 등 정형식 가지치기는 향후 1년에 2회(겨울철, 여름철) 시행 예정으로 사각전지 시행할 노선은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에도 반영
- 불필요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최대한 지양(건물저축 등 불가피한 경우만 시행)
- 대형 가로수일 경우 수고 낮추기 사업 시행 검토
- 가지치기 노선별 사진첨부시 여러 수종이 있을 경우 수종별로 촬영하고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제출 요망

● 제외지

- 가로수 터널 기 조성 및 조성대상노선
(※ 단 양버즘나무 노선은 5년에 1회 가지치기 시행)
-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는 전년도 사업시행 노선

■ 대상지 평가 지침

-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 양버즘나무 가로수의 수형상태, 가지치기 작업의 시급성, 과거 가지치기 이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 2017년 사업대상지 위주로 선정하되,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 한해 추가 선정

■ 자금 투자계획

- 2018년 총사업비 : 1,868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2019년 조정지침(안)
 - 가로수 가지치기 품셈은 2014년 표준품셈 개정결과 적용(제경비 포함)
 - 가지치기 약한 가지치기 단가 적용(18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 사업비 산정방법
 -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및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70,000원/주 내외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95,000원/주 내외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125,000원/주 내외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150,000원/주 내외
 - 흉고직경 51cm 이상 : 175,000원/주 내외

[사업담당자 : 조경관리팀 주무관 이진범(☎2133-2124)]